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제기 공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사건의 표시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562 및 2025카기1810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자: 조성훈 외 14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송성현, 박필서, 정민용, 김동욱
- 피고: 주식회사 파두

2. 총원의 범위

2023. 8. 7.부터 2023. 11. 8. 사이에 주식회사 파두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 주식을 장내에서 취득하였다가 주식회사 파두가 2023. 11. 8.자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였거나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

3. 청구취지 및 원인의 요지

가. 청구취지의 요지

피고는 총원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회사의 상장 이후 거래처 발주취소 및 매출 급감 등 피고 회사에 관한 부정적인 사실들이 밝혀짐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여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물론 이 사건 총원과 같이 실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유통시장에서 피고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함. 피고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4. 대표당사자 선임신청

총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서 위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소 제기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3항).

2025.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재판장 판사 최육진

